기획특집

제주 미래세대의 안전의식 향상 방안
: 학교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강사 고 인 종

Ⅰ. 서론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1]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정치·행정을 비롯하여 경제·문화적인 측면 등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행 법령에는 다양한 영역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항[2]이 있으나 학교는 현실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기준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우며, 학교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2014년 11월 교육부는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 과제로 '체험 위주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행'을 제시하여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 이를 위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단원 구성 및 수업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체험중심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안전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의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세월호 참사는 사고발생 209일 만인 2014년 11월 11일에 공식적으로 수색작업을 중단하였는데, 당시 사망 295명, 실종 9명이었다.

2)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예방·방지, 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연간 44시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조인식, 2014).

Ⅱ.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1.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학교보건법」은 학생의 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실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내 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안전교육 관련 정책

교육부는 2014년 11월에 학교교육을 통하여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시설과 활동시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안전대책은 안전의식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며, 안전한 교육활동의 제공과 안전한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5년 2월에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이루어졌으며, 25개의 중분류, 5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발달단계(유아~고교)에 맞게 체험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초등에서는 생활안전, 폭력·신변 안전 영역을, 고등학교에서는 실습 시 직업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그간 학교(유·초·중·고)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위촉하여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학교안전 정보센터: www.schoolsafe.kr).

〈표 2〉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 활 안 전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교 통 안 전	보행자 안전	교통 표지판 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자전거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 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사고의 원인
		자동차사고 예방법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폭력 및 신변안전	학교폭력	학교 폭력
		언어/사이버 폭력
		물리적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약물·사이버 중독	약물 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 폐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사이버 중독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시 대처요령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 폐쇄
		지혈 및 상처 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7개 영역	25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15.2

Ⅲ. 학교안전교육의 실제

1. 학교안전교육 실시 현황

2013년 기준 초·중·고등학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구지역은 초등학교가 66.0시간, 중학교가 49.1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지역은 고등학교가 45.0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표 3〉 초·중·고등학교의 안전교육 현황(2013년)

(단위: 시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균 (특수학교 제외)
서 울	49.2	38.2	34.4	43.5	40.6
부 산	48.2	44.8	41.6	46.4	44.9
대 구	66.0	49.1	43.1	46.4	52.7
인 천	48.7	45.4	40.0	-	44.7
광 주	43.7	33.9	28.6	41.8	35.4
대 전	47.7	39.1	34.5	24.3	40.4
울 산	39.0	27.1	28.0	-	31.4
세 종	45.0	31.3	42.0	-	39.4
경 기	48.7	42.7	40.3	40.2	43.9
강 원	47.0	41.8	42.3	41.0	43.7
충 북	45.9	45.7	45.0	46.2	45.5
충 남	44.0	39.0	36.0	41.0	39.7
전 북	41.8	33.5	34.5	41.0	36.6
전 남	45.0	43.1	38.0	43.0	42.0
경 북	44.4	43.5	37.5	28.8	41.8
경 남	45.5	43.3	37.1	48.1	42.0
제 주	40.5	38.8	39.3	43.3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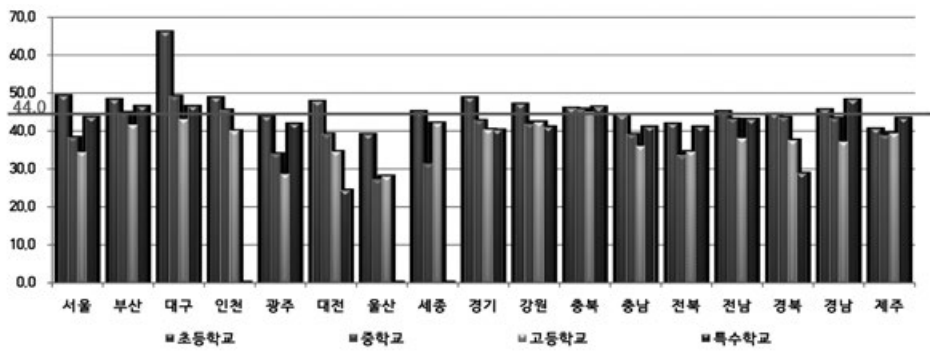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4. 7. 재구성

제주의 안전교육 현황은 초등학교가 40.5시간, 중학교가 38.8시간, 고등학교가 39.3시간, 특수학교가 43.3시간으로 나타나 규정된 44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시간(특수학교 제외)은 39.5시간으로 전국 17개 지역 중 13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안전교육 연구학교 지정 현황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51개의 안전교육 시범학교의 운영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이다. 제주의 안전교육 연구학교는 삼화초등학교 1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중학교·고등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 삼화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SH-Safety SET[3)]」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안전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중심의 체험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삼화초등학교, 2015).

〈표 3〉 전국 안전교육 연구학교 지정 현황(2015년 12월)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국	17	17	17
제 주	1 (삼화초등학교)	-	-

자료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safe.kr)

Ⅳ.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

1.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 확대

구체적이고 실천중심적인 안전체험활동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7대영역 표준안' 발표로 생활, 교통, 재난안전에서 응급처치까지 체험·실습 중심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3) 「SH-Safety SET」프로그램이란 '삼화초등학교 체험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안전교육이 이루어짐에 있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Seven standard proposals)을 기반으로 하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적 특성에 맞는 직간접적인 체험(Experience) 활동을 통해 학생 모두(Together)가 안전의식을 갖출(Set)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를 위한 교육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김종세, 2015). 2013년 10~11월, 교육부·안행부·복지부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험형 교육·훈련은 연간 5시간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체험위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내에서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도 전문적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소방서·경찰서·병원 등의 전문기관이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 교육담당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교육부의 안전교육 관련 종합대책에는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초등, 중등 체육교과, 보건 교과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의 경우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받도록 하며 교사 자격증 검정 기준 등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16. 3월 입학생 이후). 교원 임용 및 승진시에도 교원(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예정인 "(가칭)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이외에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마다 안전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과 실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교육 전담 인력 외에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3. 법·제도 정비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앞서 학교안전교육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총 44시간 안전교육 관련 규정에 대해 학교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적정 시간으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횟수를 명시하고 있다(조인식, 2014).

Ⅴ. 결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재난대응훈련 및 홍보가 중요한데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학교의 안전교육은 체험형의 방식이 아닌 이론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으로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학교안전교육 수준은 전국 17개 중 13위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안전 관련 교과활동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관련 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미래 제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보도자료. 2014.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교육부 보도자료. 2015.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영역 표준안' 발표: 생활, 교통, 재난안전에서 응급처치까지, 체험·실습 중심으로 편성.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safe.kr).

김종세. 2015. 현행법상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6(2): 121-141.

삼화초등학교. 2015. 교육부 요청 도지정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계획서: SH-Safety SET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조인식. 2014.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249호.